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4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법」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수정
(안 제11조, 안 제13조, 안 제15조, 안 제17조, 안 제18조, 안 제2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에 따라,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,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, 해당 법 인용조문을 개정한 것임.

개정 전 지방세법	개정 지방세법(시행일: 2020.1.1.)
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</p>	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</p>
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. 지하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 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 5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 6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 	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② 특정시절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 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 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

○ 안 제5절, 제18조 및 제20조는,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하고, 해당 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- 본 조례안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한 것은,
 - 이전 「지방세법」에서는, 지역자원시설세를 ①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②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분류하였던 것을,
 - 「지방세법」 개정(시행일:2020. 1. 1.)을 통해,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

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①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②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③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로 재분류하여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한 것에 따른 것임.

개정 전 지방세법	개정 지방세법(시행일: 2020.1.1.)
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. 발전용수 2. 지하수 3. 지하자원 4. 컨테이너 5. 원자력발전 6. 화력발전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	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. 발전용수 2. 지하수 3. 지하자원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1. 컨테이너 2. 원자력발전 3. 화력발전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
○ 안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1월1일로 규정한 것은,

- 「지방세법」 부칙제1조제2호에 따른 것임.

※ 「지방세법」 부칙 제1조(시행일) 2. 제128조제3항·제4항,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,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: 2021년 1월 1일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,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관련사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